

물질안전보건자료

제품명 :TOLUENE

긴급전화번호 (Emerhency Telephone Number) 061 - 688 - 6117 (24 hours)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

○ 제품명: TOLUENE○ UN번호: 1294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권고용도 : 염료, 안료, 합성크레졸, 감미료, 표백제, 폴리우레탄 원료, 벤젠/ 크실렌 원료, 석유정제, 화약등

○ 사용상의 제한 : 사용상 주의사항을 숙지할 것

다. 제조사/공급자/유통업자 정보

○ 제조사

회사명: 여천NCC

긴급전화번호/팩스: 061-688-6117

주소: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3로 2 (평여동 205-6)

2. 유해위험성

가. 유해위험성 분류

- 인화성 액체 구분 2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구분 2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구분 2
- 생식독성 구분 2
- 특정표적장기·전신 독성(1회 노출) 구분 3(마취)
- 특정표적장기·전신 독성(반복 노출) 구분 2
- 흡인유해성 구분 1
-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그림문자



○ 신호어 : 위험

○ 유해위험 문구

H225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H304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19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H336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H361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H373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신체 중 상피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 예방조치문구

- 예방

P201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P202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P210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P233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P240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합시키거나 접지하시오.

P241 폭발 방지용 전기·환기·조명·장비를 사용하시오.

P242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만을 사용하시오.

P243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P260 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 흡입하지 마시오.

P261 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대응

P301 + P310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2 + 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로 씻으시오.

P303 + P361 + P353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으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P304 + P34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05 + P351 + 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P308 + P313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14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P321 의학적 처치를 하시오.

P331 토하게 하지 마시오.

P332 + P313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P337 + P313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P362 + P364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370 + P378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하시오.

- 저장

P403 + P233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P403 + P235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P405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



- 폐기

P501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위험성

물질명	NFPA 지수		
	보건	화재	반응성
톨루엔	2	3	0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7.20.]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2호, 2017.7.20., 일부 개정]제 5조 ④(전략)_유해화학물질이 이 규정 별표4에 따른 분류·표시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류·표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_에 따라 별표 4의 구분을 사용 작성 되었으나,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시행 2016.4.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 2016.4.6, 일부개정] <별표1> 3.3 나. 단일물질의 분류 심한 눈 손상성 구분 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①피부 부식성 물질'에 해당되어 심한 눈 손상성/자극성 구분2를 포함 함.

_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7.20.]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2호, 2017.7.20., 일부개정] 제 5조 ④ (전략) 다만 별표 4와 다른 분류·표시를 하는 경우는 그 증거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 No.	함유량(W%)
톨루엔	톨루엔	108-88-3	99 ~ 100

4. 응급조치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즉시 의료조치를 취하시오.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경미한 피부 접촉 시 오염부위 확산을 방지하시오.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뜨거운 물질인 경우, 열을 없애기 위해 영향을 받은 부위를 다량의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씻어내시오.
- 화상의 경우 즉시 찬물로 가능한 오래 해당부위를 식히고, 피부에 들러붙은 옷은 제거하지 마시오.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 비누와 물로 피부를 씻으시오.
-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격리하시오.
- 재사용 전에는 옷과 신발을 완전히 씻어내시오.
- 즉시 의료조치를 취하시오.

다. 흡입했을 때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따뜻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주시오.
- 물질을 먹거나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시오.
-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 라. 먹었을 때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물질을 먹거나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시오.
 -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입으로 아무것도 먹이지 마시오.
 - 즉시 의료조치를 취하시오.
-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아드레날린 제제를 투여하지 마시오.
 -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 폭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추적조사 등의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하시오.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 적절한 소화제
 - CO2
 - 건조하학제
 - 내알콜포말(알코올 또는 극성용매 혼합물의 경우)
 - 모부모
 -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 일반포말
 -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 부적절한 소화제
 - 직접주수
-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열분해성 생성물
 -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 화재 및 폭발 위험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가열시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실내, 실외, 하수구에 폭발 위험.
 -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 고인화성;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됨.
 - 누출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
 - 실내, 실외, 하수구에서 증기 폭발 위험이 있음.
 -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점화할 수 있음.
 - 인화점이나 그 이상에서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화재시 자극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 증기는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증기는 점화원까지 이동하여 역화(flash back)할 수 있음.
-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누출물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 대부분 물보다 가벼우니 주의하시오.
- 대부분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지면을 따라 확산하고 저지대나 밀폐공간에 축적될 수 있음.
-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 일부는 고온으로 운송될 수 있음.
- 접촉 시 피부와 눈에 화상을 입힐 수 있음.
-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 탱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
-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 노출물을 만지거나 걸어다니지 마시오.
 - 매우 미세한 입자는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물질 취급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하시오.
 -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오염지역을 환기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에 손대지 마시오.
 - 증기발생을 줄이기 위해 증기억제포말을 사용할 수 있음.
 - 플라스틱 시트로 덮어 확산을 막으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건조모래/흙, 기타 비가연성 물질로 덮거나 흡수한 후 용기에 옮기시오.
 - 다량 누출시 액체 누출물과 멀게하여 도랑을 만드시오.
 -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 소량 누출시 다량의 물로 오염지역을 씻어내시오.
 - 소량 누출시 모래, 비가연성 물질로 흡수하고 용기에 담으시오.
 - 소화를 위해 제방을 쌓고 물을 수거하시오.
 -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 청결한 방폭 도구를 사용하여 흡수된 물질을 수거하시오.
 - 청결한 삽으로 누출물을 깨끗하고 건조한 용기에 담고 느슨하게 닫은 뒤 용기를 누출지역으로부터 옮기시오.
- 가. 안전취급요령
 - 용기 취급시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기계장치를 사용을 권장.

7. 취급 및 저장방법



- 작업시에는 "제8항"에 의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것.
- 투입시 원액의 피부 및 눈과 직접 접촉을 피할 것. 취급 후 깨끗이 씻을 것.
- 화염, 불꽃, 스파크 등에 의한 화재를 주의할 것.
- 나. 안전한 저장방법(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 강 산화제 및 산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을 선택할 것.
 - 드럼 취급시의 안전공간이 확보된 곳에서 작업할 것. 3단 이상의 적재를 금함.
 - 포장용기가 손상 및 오손될 수 있는 곳을 피할 것.
 - 환기가 양호하고, 직사광선이나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

구성성분	국내규정	ACGIH규정	생물학적 노출기준
톨루엔	TWA: 50ppm STEL: 150ppm	TWA 20 ppm	마뇨산 2.5 g/g crea

-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샤워를 설치하시오.
- 다. 개인보호구
 - 호흡기 보호
 - 사용 빈도가 높거나 노출이 심한 경우에는 호흡용 보호구가 필요.
 - 호흡용 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눈 보호
 - 비산물, 유해한 액체로부터 보호되는 보안경을 겹쳐 사용할 수 있는 보안면을 착용할 것.
 - 작업장 가까운 곳에 분수식 눈 세척시설 및 비상세척설비(샤워식)를 설치할 것.
 - 손 보호
 - 피부접촉을 보호하기 위한 내화학성(라텍스, 니트릴 고무, 피브이씨)재질의 불투습형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
 - 신체 보호
 - 유제의 반복 또는 장기 접촉을 피하기 위한 내화학성 재질의 내유성 불투습형 보호의 및 안전화를 착용할 것.

9. 물리 화학적 특성

외관	액체
냄새	벤젠과 같은 냄새
냄새역치	2.14 ppm
pH	자료없음
녹는점/어는점	−94.9 °C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110.6 ℃



인화점	4 °C
증발속도	자료없음
인화성(고체, 기체)	고인화성 액체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MIN: 1.1, MAX: 7.1
용해도	자료없음
수용해도(양)	526mg/L (25℃)
증기압	28.4 mmHg
비중	0.8660 (20/4)
N-옥탄올/물 분배계수	2.73
자연발화온도	480 ℃
분해온도	자료없음
증기밀도	3.1(AIR=1)
점도	0.560mPa.s(25℃)
분자량	92.14

10. 안전성 및 반응성

-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가열시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실내, 실외, 하수구에 폭발 위험.
 -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 고인화성;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됨.
 - 누출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
 - 물질의 흡입은 유해할 수 있음.
 -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 상온상압조건에서 안정함.
 - 실내, 실외, 하수구에서 증기 폭발 위험이 있음.
 - 인화점이나 그 이상에서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일부 액체에서 현기증 및 질식을 유발하는 증기를 발생할 수 있음.
 - 증기는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나. 피해야 할 조건(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 열, 스파크, 화염 등 점화원.
- 다. 피해야 할 물질
 - 가연성 물질, 환원성 물질.
 - 자극성, 독성 가스.
-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부식성/독성 흄.



-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
-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액체로 눈, 피부, 경구를 통해 노출 가능성이 있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 제품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구성 성분별 자료를 기재 함.

○ 급성독성

● 경구 PRODUCT: 해당없음

- 톨루엔: 해당없음 / LD50 > 5580 mg/kg Rat

● 경피 PRODUCT: 해당없음

- 톨루엔: 해당없음 / LD50 > 5000 mg/kg Rabbit

● 흡입(가스) PRODUCT : 해당없음

- 톨루엔 : 해당없음

● 흡입(증기) PRODUCT : 해당없음

- 톨루엔 : 해당없음 / LC50 28.1mg/L/4h Rat

● 흡입(분진/미스트) PRODUCT: 해당없음

- 톨루엔 : 해당없음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PRODUCT : 구분 2

- 톨루엔: 구분 2 / 자극성 Rabbit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PRODUCT : 구분2

- 톨루엔 : 구분2/ 자극성 Rabbit

○ 호흡기 과민성 PRODUCT : 자료없음

- 톨루엔 : 자료없음

○ 피부 과민성 PRODUCT : 해당없음

- 톨루엔: 해당없음 / 비과민성 Guinea pig

○ 발암성 PRODUCT : 자료없음

- 톨루엔 : 해당없음

· 고용노동부고시 : 해당없음

· OSHA : 해당없음 · NTP : 해당없음

· IARC: 3

· EU CLP : 해당없음

· ACGIH: A4

○ 생식세포 변이원성 PRODUCT : 해당없음

- 톨루엔:해당없음 / 음성 Mouse lymphoma cells

○ 생식독성 물질 PRODUCT : 구분 2

- 톨루엔 : 구분 2 / 일부 역학 조사에서 작업장에서 톨루엔에 노출될 경우 자연 유산이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생식 영향이 있는 것이 관찰됨

○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PRODUCT : 구분 3(마취)



- 톨루엔: 구분 3(마취) / 6.08 mg/L로 노출시킨 결과 부정적인 임상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모든 생존한 랫드는 3일 이후에 정상적인 형태를 보임 Rat

-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PRODUCT : 구분 2
 - 톨루엔: 구분 2 / 톨루엔은 600 ppm 이상에서 쥐 코 상피에서 국소 독성을 야기함 Rat
- 흡인유해성 물질 PRODUCT : 구분 1
 - 톨루엔 : 구분 1 / 흡인으로 인하여 급성 신부전증 및 심각한 근색뇨병이 관찰됨 Human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가. 생태독성 PRODUCT 급성 수생 환경유해성 : 구분외, 만성 수생 환경유해성 : 구분외
 - 어류
 - 톨루엔: LC50 5.5 mg/L/96h Fish(Oncorhynchus kisutch)
 - 갑각류
 - 톨루엔: LC50 3.78 mg/L Aquatic invertebrates(Ceriodaphnia dubia)
 - 조류
 - 톨루엔: ErC50 29 mg/L/72h Aquatic algae(Selenastrum capricornutum)
- 나. 잔류성 및 분해성
 - 분해성
 - 톨루엔: 침전물에 흡착되지 않고, 증발되거나 생분해됨. BOD: 80% (20일)
 - 잔류성
 - 톨루엔 : log Kow 2.73
- 다. 생물농축성
 - 생물농축성
 - 톨루엔: BCF 90 Fish(Leuciscus idus melanotus)
 - 생분해성
 - 톨루엔 : BOD/ThOD 69 %
- 라. 토양이동성
 - 옥탄올탄소분배계수(Koc)
 - 톨루엔 : Koc >= 34
- 마. 기타 유해 영향
 - 기타
 - 톨루엔 : 자료없음
 - 오존층 유해성
 - 톨루엔 : 해당없음

13. 페기시 주의사항

- 가. 폐기방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등)에 의한 처리기준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것



-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 유수분리후 정제하여 재활용하거나 소각처리할 것.
- 나. 폐기시 주의사항
 - 빈 용기는 환경관련 법규에 의거 처리 재생할 것.
 - 빈 용기를 용접, 가열, 절단시 폭발하여 잔류물이 발화할 수도 있음.
 - 빈 용기에 압력을 주면 파열하는 경우가 있음.
 - 작업시에는 "제8항"에 의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것.
 - 하천, 호수, 토양, 배수구에 직접 유출을 피할 것.
 - 화기엄금, 밀폐보관, 흡입금지, 외부 유출금지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 번호 : 1294

나. 유엔 적정 선적명 : TOLUENE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3

라. 용기등급 : II

마. 해양오염물질: 해당없음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 화재시 비상조치의 종류 : F-E ○ 유출시 비상조치의 종류 : S-D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톨루엔: 관리대상유해물질, 노출기준설정대상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이를 1 wt% 이상 함유한 제제, 측정주기:6개월, 진단:대상작업장 지정 후 30일 이내), 특수건강진단물질(이를 1 wt% 이상 함유한 제제, 측정주기:12개월, 진단:6개월 이내),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규정량 5,000kg(저장:200,000kg))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톨루엔: 사고대비물질, 유독물질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톨루엔 : 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액체) 200ℓ

라. 폐기물관리법

지정폐기물 (그 밖의 폐유기용제)

-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규제

- 톨루엔: 대기오염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톨루엔: 해당없음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에 의한 규제

- 톨루엔 : 수질오염물질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톨루엔: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톨루엔: F; R11 Xi; R38 Xn; R48/20-65 Repr.Cat.3; R63 R67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톨루엔: R11, R38, R48/20-65, R63, R67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톨루엔 : S:(2)-36/37-46-62
- 2006/507/EC
 - 톨루엔 : 해당없음
- 689/2008/EC
 - 톨루엔: 해당없음
- Designation, Reportable Quantities, and Notification
 - 톨루엔: 1000 lb final RQ; 454 kg final RQ
- Emergency Planning and Notification
 - 톨루엔: 해당없음
- Toxic Chemical Release Reporting Community Right-to-Know
 - 톨루엔: 1.0 % de minimis concentration
- Process Safety Management of Highly Hazardous Chemicals
 - 톨루엔 : 해당없음

16. 기타 참고사항

- 가. 자료의 출처
 - ACGIH
 - ATSDR
 - American Chemical Society, Washington DC.
 - American Industrial Hygiene Association Journal 30, 470-476
 - Chemosphere 14 (10). 1589-1616.
 - EHC
 - EHCA
 - Ecotoxicol. Environ. Saf. 39, 136-146.
 - HSDB
 - IARC
 - IUCLID
 - Marine Biology 31, 305-310
 - Publication
 - RTECS
 - Study report



- Toxicology 4, 5-15
- Transactions A. Fish. Soc. 110, 430-436.
- Water Research 13, 627-630
-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국내 관련 규제 법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작성함.
- 본 MSDS는 KOSHA, NITE, ESIS, NLM, SIDS, IPCS, NCIS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음.
- 나. 최초 작성일자: 2000.01.03
-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0.0.0: 2000.01.03 제정
 - 1.0.0: 2006.09.04 개정 (소방법 → 위험물 안전관리법)
 - 2.0.0: 2008.01.04 개정 (광주지방노동청 시정지시서의 권고사항 반영)
 - 3.0.0: 2008.02.25 개정 (노동부고시 2006-36호에 의거, 유해 위험성분류 등 개정)
 - 4.0.0: 2010. 05.20 개정

다음의 부분에서 내용 개정

- 2. 유해, 위험성: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추가 및 삭제
- 9. 물리, 화학적 특성: 인화, 폭발 범위, 증기압, 용해도, 점도 변경
- 11. 독성에 관한 정보: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피부과민성 등 자료 변경
- 12. 환경 영향 정보: 생태독성, 생물농축성 자료 변경
-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해양오염물질, 비상조치 종류 변경
- 5.0.0: 2013.06.05 개정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 등 개정)
- 6.0.0: 2013.09.25 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따라 개정함)
- 7.0.0: 2014.01.02 개정 (도로명 주소로 전환에 따른 개정)
- 8.0.0: 2014.08.21 개정 (9. 물리화학적 특성, 증기압 수정에 따른 개정)
- 9.0.0 : 2014.10.27 개정 (9. 물리화학적 특성, 비중 수정에 따른 개정)
- 10.0.0 : 2016.10.07 개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화학물질 관리법 수정 등에 따른 개정)
- 10.1.0 : 2016.11.03 개정 (2. 유해위험문구 신호어 추가(누락)에 따른 개정)
- 10.1.1 : 2017.01.03 개정 (2. 오탈자 수정 # NAME? → 폐기에 따른 개정)
- 11.0.0 : 2017.12.21 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시행 2016.4.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 2016.4.6, 일부개정] <별표1> 3.3 나. 단일물질의 분류 심한 눈 손상성 구분 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①피부 부식성 물질' 에 해당되어 심한 눈 손상성/자극성 구분2를 포함,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시행 2016.4.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
- 2016.4.6., 일부개정] 개정에 따른 오존층 유해성 반영 및 P CODE 수정 등에 따른 개정)
- 12.0.0 : 2018.12.05 개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문구 수정 (검정("안" 마크)을 필할 것. →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16. 기타 참고사항 라.기타 문구 추가(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정

13.0.0 : 2019.12.12 개정 (11. 독성에 관한 정보 급성독성(흡입) 정보 기재,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해성 정보 기재,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수정,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항목 별로 인용한 자료의 출처 추가 수정에 따른 개정)

라. 기타

- ※ 본 자료는 제품 규격서 용이 아닌 사용자의 산업보건과 취급안전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 ※ 본 MSDS는 작성 시점 본사가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물질에 알려지지 않은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 본 MSDS 상 주의사항 및 기타 정보는 일반적인 용도에 관한 것이므로 특별한 용도로 제품을 취급할 경우에는 사용 전 의도된 용도 및 사용에 적합한 추가 안전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6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_물질안전보건자료에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를 첨부하여 제공하여야 한다._ 의 내용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 정보를 MSDS 에 첨부(다음페이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

확인필

(제1쪽)

				<u>(제1숙)</u>	
제 공 자	상호(명칭)	여천NCC(주)	사업자등록번호	104-81-49115	
	성명(대표자)	최금암, 이규정 담당자 성당 및 연락처		정영술	
	소재지(사업장)		본사: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남대문로4가) (전화번호:02-6050-2422 8층(대한상공회의소 빌딩) (팩스번호:		
	화학물질명(총칭명)	Toluene			
물 질	고유번호(CAS No. 등)	108-88-3 상품명		TOLUENE	
_르 정 보	등록번호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생략 가능)	제04-1809-03079호	용도	33. 중간체(intermediates)	
	유해화학물질 (함유)여부	[V] 유독물질 [] 허가물질 [] 제한물질 [] 금지			

※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자료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술내용	
위 해 성 정 보	용도기술 (공급망내 확인된 용도)		33. 중간체(intermediates): 벤젠 합성용 중간체	
		사용시간 및 빈도	연간 사용일수 : 약 350일(지속적·빈번한)	
		단위시간 또는 작업당 사용량	1일 평균 사용량 : 약 239.997 톤/일	
	제조공정 기술 (작업조건)	해당 용도에 대한 기타 작업조건	 PROC1 : 노출 우려가 거의 없는 밀폐된 연속 공정 PROC2 : 간헐적인 노출이 있는 밀폐된 연속 공정 (운전자 설비 보수) PROC8b : 고정형 저장용기에 저장 또는 저장용기로부터 이송 	
	위해성저감조치	인체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 호흡기 보호: - 위험 부과에 의해 공기 정화 마스크가 적합하다고 보 여진 곳에, 다목적으로 조합된 전면 마스크(US)를 사용 하거나 엔지니어를 통제하는 대안으로서 ABNK (EN 14387) 타입의 마스크 카트리지를 사용할 것. 만 약 이 방독 마스크가 보호의 유일한 수단이라면, 전면 공기정화 마스크 를 사용할 것. 방독마스크 같은 물질 은 정부에서 지정한 NIOSH (US) or C EN (EU) 같은 시 험되고 인증된 물질을 사용할 것.	

			- 장갑으로 다룸 장갑은 사용하기 전에 검사해야 합니다. 이 제품 사용 시에 피부에 접촉하는 것을 피하기위해 적당한 장갑 제기 거술 (장갑 외부 표면을 만지지 않는)을 사용. 사용된 후에 오염된 장갑들은 적용법률 및 GLP(Good laboratory practice)에 따라 폐기손 세척 및 건조 선택된 보호장갑은 EU 지침 89/686/EEC와 여기서 파생된 EN 374 표준의 규격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신체 보호: - 화학물 완전 보호복, 보호용구 종류는 특정 작업장에서의 위험물질의 농도와 양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 누출지역은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할 것 누출지역을 적어도 반경 50~100미터까지 차단시킬 것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가라앉아 낮은 곳(하
		환경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수구, 지하 등)에 모이게 되므로 저지대를 피할 것. - 바람과 반대방향(upwind)으로 위치할 것. -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는 파손된 용기나 누출 물을 만지지 말 것. - 화재진압용 보호의는 누출시에는 비효율적이므로 화재 발생 시에만 착용할 것. - 누출물과 가연성물질(나무, 종이, 기름 등)이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 모든 점화원을 제거할 것. - 수로나 하수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폐기물 관리조치	- 소각(rotary kiln소각은 820~1,600℃, fluiduzed bed 소각은 450~980℃)할 것. - 가연성이 좋은 물질에 녹이거나 혼합시킨 후 재연소 장치 및 가스세정기가 부착된 화학소각로에서 태울 것.
	노출정보 및 하위사용자 지침		경피 노출 6.86E-01 mg/kg/day 흡입 노출 3.36E+00 mg/m ³ 백상지 80g/m²(재활용품)]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

확인필

(제1쪽)

				(1117)
제 공 자	상호(명칭)	여천NCC(주)	사업자등록번호	104-81-49115
	성명(대표자)	최금암, 이규정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정영술
	소재지(사업장)		본사: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남대문로4가) (전화번호:02-6050-242 8층(대한상공회의소 빌딩) (팩스번호:	
	화학물질명(총칭명)	Toluene		
물 질	고유번호(CAS No. 등)	108-88-3	상품명	TOLUENE
_드 정 보	등록번호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생략 가능)	제 04-1809-03079호	용도	48. 용제(Solvents)
	유해화학물질 (함유)여부	[V] 유독물질 [] 허가물질 [] 제한물질 [] 금지물질		

※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자료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술내용	
		용도기술 배 확인된 용도)	48. 용제(Solvents): 자동차에 도장용 도료 생산 시 수지 등의 고분자를 용해하는 용제	
		사용시간 및 빈도	연간 사용일수 : 약 365일(지속적·빈번한)	
	제조공정 기술 (작업조건)	단위시간 또는 작업당 사용량	1일 평균 사용량 : 약 167.123 톤/일	
위 해 성 정 보		해당 용도에 대한 기타 작업조건	 PROC1: 노출 우려가 거의 없는 밀폐된 연속 공정 PROC2: 간헐적인 노출이 있는 밀폐된 연속 공정 (운전자 설비 보수) PROC4: 간헐적인 노출이 있는 회분 또는 합성 공정 (작업자가 직접 원료주입/제품 포장) PROC8a: 비고정형 저장용기에 저장 또는 저장용기 로부터 이송, 운반 PROC8b: 고정형 저장시설에 저장 또는 저장시설 로부터 이송, 운반 PROC9: 지정된 주입 라인에서 소형용기에 주입하는 공정 PROC10: 롤러 및 브러시 작업 	
	위해성저감조치	인체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호흡기 보호: - 위험 부과에 의해 공기 정화 마스크가 적합하다고 보 여진 곳에, 다목적으로 조합된 전면 마스크(US)를 사용 하거나 엔지니어를 통제하는 대안으로서 ABNK (EN 14387) 타입의 마스크 카트리지를 사용할 것. 만 약 이 방독 마스크가 보호의 유일한 수단이라면, 전면	

		공기정화 마스크 를 사용할 것. 방독마스크 같은 물질 은 정부에서 지정한 NIOSH (US) or C EN (EU) 같은 시 험되고 인증된 물질을 사용할 것.
		· 눈 보호: - 단단히 조이는 안전 안경 안면보호기(최소 8인치) NIOSH(US) 또는 EN166(EU)와 같은 합당한 정부 기준 아래 인증받아 시험을 통과한 눈 보호용 도구 사용.
		· 손 보호: - 장갑으로 다룸 장갑은 사용하기 전에 검사해야 합니다. 이 제품 사용 시에 피부에 접촉하는 것을 피하기위해 적당한 장갑 제기 거술 (장갑 외부 표면을 만지지 않는)을 사용. 사용된 후에 오염된 장갑들은 적용법률 및 GLP(Good laboratory practice)에 따라 폐기손 세척 및 건조 선택된 보호장갑은 EU 지침 89/686/EEC와 여기서 파생된 EN 374 표준의 규격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신체 보호: - 화학물 완전 보호복, 보호용구 종류는 특정 작업장에서의 위험물질의 농도와 양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환경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 누출지역은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할 것. - 누출지역을 적어도 반경 50~100미터까지 차단시킬 것. -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가라앉아 낮은 곳(하수구, 지하 등)에 모이게 되므로 저지대를 피할 것. - 바람과 반대방향(upwind)으로 위치할 것. -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는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을 만지지 말 것. - 화재진압용 보호의는 누출시에는 비효율적이므로 화재발생 시에만 착용할 것. - 누출물과 가연성물질(나무, 종이, 기름 등)이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 모든 점화원을 제거할 것. - 수로나 하수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폐기물 관리조치	- 소각(rotary kiln소각은 820~1,600℃, fluiduzed bed 소각은 450~980℃)할 것. - 가연성이 좋은 물질에 녹이거나 혼합시킨 후 재연소 장치 및 가스세정기가 부착된 화학소각로에서 태울 것.
노출정보 및 하위사용자 지침	최적 작업조건 하의 산정 노출량	경피 노출 8.23E-01 mg/kg/day 흡입 노출 4.03E+00 mg/m ³
	210 _{mm} × 207 _{mm} [백상지 80g/m²(재활용품)]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

확인필

(제1쪽)

				(:: 1-)
제 공 자	상호(명칭)	여천NCC(주)	사업자등록번호	104-81-49115
	성명(대표자)	최금암, 이규정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정영술
	소재지(사업장)	본사: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남대문로4가) (전화번호:02-6 8층(대한상공회의소 빌딩) (팩스번호:		
	I			
	화학물질명(총칭명)	Toluene		
물 질 정 보	고유번호(CAS No. 등)	108-88-3	상품명	TOLUENE
	등록번호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생략 가능)	제 04-1809-03079호	용도	34. 실험실용 물질(Laboratory chemicals)
	유해화학물질 (함유)여부	[V] 유독물질 [] 허	가물질 []저	한물질 []금지물질

※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자료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술내용
위 해 성 정 보	용도기술 (공급망내 확인된 용도)		34. 실험실용 물질(Laboratory chemicals): 톨루엔 성분분석과 공정개선을 위한 시험분석
	제조공정 기술 (작업조건)	사용시간 및 빈도	연간 사용일수 : 약 200일(지속적·빈번한)
		단위시간 또는 작업당 사용량	1일 평균 사용량 : 약 0.005 톤/일
		해당 용도에 대한 기타 작업조건	- PROC15 : 노출 우려가 거의 없는 밀폐된 연속 공정
	위해성저감조치	인체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 호흡기 보호: - 위험 부과에 의해 공기 정화 마스크가 적합하다고 보 여진 곳에, 다목적으로 조합된 전면 마스크(US)를 사용 하거나 엔지니어를 통제하는 대안으로서 ABNK (EN 14387) 타입의 마스크 카트리지를 사용할 것. 만 약 이 방독 마스크가 보호의 유일한 수단이라면, 전면 공기정화 마스크 를 사용할 것. 방독마스크 같은 물질 은 정부에서 지정한 NIOSH (US) or C EN (EU) 같은 시 험되고 인증된 물질을 사용할 것. · 눈 보호: - 단단히 조이는 안전 안경 안면보호기(최소 8인치) NIOSH(US) 또는 EN166(EU)와 같은 합당한 정부 기준

	-				
			아래 인증받아 시험을 통과한 눈 보호용 도구 사용.		
		환경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 누출지역은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할 것. - 누출지역을 적어도 반경 50~100미터까지 차단시킬 것. -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가라앉아 낮은 곳(하수구, 지하 등)에 모이게 되므로 저지대를 피할 것. - 바람과 반대방향(upwind)으로 위치할 것. -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는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을 만지지 말 것. - 화재진압용 보호의는 누출시에는 비효율적이므로 화재발생 시에만 착용할 것. - 누출물과 가연성물질(나무, 종이, 기름 등)이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 모든 점화원을 제거할 것. - 수로나 하수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폐기물 관리조치	- 소각(rotary kiln소각은 820~1,600℃, fluiduzed bed 소각은 450~980℃)할 것. - 가연성이 좋은 물질에 녹이거나 혼합시킨 후 재연소 장치 및 가스세정기가 부착된 화학소각로에서 태울 것.		
	노출정보 및 하위사용자 지침	최적 작업조건 하의 산정 노출량	경피 노출 2.06E-02 mg/kg/day 흡입 노출 2.30E-00 mg/m ³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